

결혼제도 밖 생활공동체에 대한 차별현황 및 문제점

김원정 (전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연구원,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1. 들어가며

우리사회는 이성애 부부와 혈연관계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 나아가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가족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굳건히 지탱되어 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가정되는 많은 법률과 제도 역시 이를 토대로 구조화되어 있어, 현실 세계에 아무리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한다 해도 사회적으로는 ‘정상’ 또는 ‘비정상’ 으로부터 인지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를 이른바 ‘다양한 가족의 확대’ 로 설명하는 논의들이 늘어나고, 동성애커플과 같이 과거에는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던 가족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정상/비정상의 경계는 분명 도전받고 있다. 또 결혼·혈연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생활공동체의 목소리는 가족의 경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비정상’ 가족들이 왜, 어떤 형태로 공동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별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들 가족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들-차별, 소외, 배제, 다양성 혹은 다른 어떤 말들-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두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각각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담론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 중 하나로 이 글은 이른바 기존의 결혼·가족제도 바깥의 생활공동체들의 현실을 ‘가족상황차별(family status discrimination)’ 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차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흔히 차이의 위계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불이익한 대우, 기회의 박탈, 정체성의 훼손 등과 관련되며, 그것의 해소는 평등, 정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연결된다. 때문에 결혼·가족제도 바깥의 생활공동체의 상황을 차별로 진단하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그것의 개선이 우리사회의 당위적인 과제로 자리매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 당사자들 스스로가 불합리한 처우, 불쾌한 감정 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먼저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나 문헌자료, 매체 등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생활공동체, 특히 결혼제도 바깥에 있는 커플중심 가족의 차별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을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로 규정할 것인지 법·제도적,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많으며, 미처 드러나지 못한 다양한 가족들의 경험도 많다. 향후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은 가족상황차별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가. 가족상황차별의 정의¹⁾

가족상황차별에 대해 차별연구모임(2002)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 과정,

1) 이 부분은 김소임(2007), 「인정(認定) 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함.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²⁾

여기서 가족상황이란 ‘가족구성의 형태, 가족의 구성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의 가족 형태와 부모, 남편, 아내 또는 자녀라는 가족 내의 위치,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³⁾ 가족상황에 근거한 차별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가족 유형이나 가족의 역할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만큼, 법적 부부 중심의 이성애적 핵가족 외의 가족에 대한 제도와 정책 또는 사회·문화적인 차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차별의 종류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족상황차별 또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harass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족상황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공식·비공식적인 규칙, 정책, 관행, 기준, 규정, 자격요건 등이 실제 그 효과에 있어 가족상황에 따라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역시 가족상황차별로 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일정기간 야간근로를 지시하였을 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되었다면, 이는 가족상황에 따른 간접차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직장이나 공공시설, 공공장소 등에서 가족상황과 관련한 농담, 조롱, 경멸적인 언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공격하는 괴롭힘 행위도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뿐 아니라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제2조 4항), 그동안 이러한 차별은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가족차별’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으며 다른 차별요소와 중층적으로 나타날 때 성차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등과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 남아있기도 했다. 이러한 용어의 불분명함은 용어 자체의 문제에 앞서,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차별이 본격적으로 ‘문제화’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 생활공동체의 범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나 사회통념상 ‘가족’으로 여겨지는 전형적인 형태 이외의 가족 또는 생활공동체를 범주화하는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가족원의 수(1인/2인/3인 이상), 가족구조의 특성(확대가족/핵가족/한부모가족), 가족원의 특성(재혼/입양/국제결혼), 생활양식의 특성(맞벌이/주말부부/기러기가족 등) 등이 이제까지 가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기준들이다. 이 글이 결혼제도 바깥의 생활공동체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가족차별상황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족을 그러한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비혼 가구의 경우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글이 다루는 가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결혼제도 바깥에 있음으로 인해 1인 비혼자들이 겪는 가족상황차별의 예는 매우 많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공동체와 같이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이를 기존의 결혼·가족관계와 유사한 성격의 생활공동체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타 가족과 유사한 안정성을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그리

2) 차별연구모임(2002),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판단을 위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3) 정인섭 외(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한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가족의 범주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결혼관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제도 바깥에 있는 ‘커플(파트너) 중심 생활공동체’로 사례를 한정하고자 한다. 물론 커플 중심 생활공동체를 분류하는 기준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갖는 법률혼과 구별하여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는 애초 법률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동성애 커플이나 성전환자를 포함한 커플에게는 무의미한 기준이 된다. 또 사실혼이 성립될 수 있는 혼인의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랜 기간 동거한 이성애 커플이 법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물론 이러한 가족에 대한 보호책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각기 다른 절차에 의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만으로 결혼제도 바깥의 생활공동체를 포괄하는 것은 개인들의 능동적인 가족 ‘구성’의 의사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변화의 일면만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사실혼, 이성애 동거커플, 동성애커플 등을 모두 포괄하여 2인의 동반자로 구성된 여러 생활공동체들의 사례를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례수집 자료

이 글은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에서 지난 2월 발행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 중 동성애 가족, 트랜스젠더 가족, 이성애자 가족 중 등록되지 않은 가족, 장애인 가족, 공동체 가족, 1인 가구 등 12가구 구성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⁴⁾를 바탕으로 커플 중심 생활공동체의 경험을 정리했다. 그 외에도 지난 2005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수첩 배포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동성애자·장애인 등 19건의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 「경계와 차별을 넘어 ‘가족’ 차별 드러내기, 실천적 대안찾기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사례들을 참고하였고, 동성애자 가족구성권에 관한 발간자료⁵⁾, 신문기사에 실린 사례도 포함했다.

2. 가족상황차별 현황과 문제점

여기서는 앞서 정의한 가족상황차별 사례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먼저 법·제도상의 차별 부분에서는 조세, 주거, 사회보험, 재산관계 등 분야별로 현행 법률이나 제도·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커플 중심 생활공동체가 겪은 직·간접적인 차별사례를 모아 그러한 법·제도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차별로는 공식·비공식적인 법, 제도에 따른 차별은 아니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한 결혼,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다양한 가

4) 나비야·리언·오가람·한영희(2008),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이야기: 제도 밖의 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구성권 연구모임·민주노동당,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

5) 조여울 외(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2006), 「2006 동성애자 가족 구성권 자료집」.; 여기동(2004),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발표집」. 등

족들이 겪는 소외감, 직장·학교·이웃·기존 가족 등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의 배제 사례들을 모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별은 직접적인 불이익 처우를 유발하는 아니지만, 실제 결혼제도 바깥의 생활공동체가 겪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가) 법·제도적 차별

1) 조세

우리나라 조세제도 중 근로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이지만 각종 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금의 책정이 가족구조·생활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적 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여성가장 부녀자에 대한 추가공제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 등인데, 이는 혼인·혈연관계의 가족만을 공제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다자녀 추가공제와 같이 특정한 가족모델을 장려하는 일종의 유인책의 성격을 띤다. 또 지출에 따른 공제 항목은 △공적·민간 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이사, 장래, 예식비 등으로, 결혼→자녀양육·교육→주택마련→노후·질병으로 이어지는 특정한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전형적인 이성에 핵가족의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가족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혼·가족제도 바깥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형평성있는 조세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저는 학원 강사를 아르바이트로 하거든요. 자영업으로 분류되는데 아무것도 혜택 같은 게 전혀 없죠. 예를 들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무튼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세금 환급이나 소득 공제 등은 하나도 없죠. 동일 수준에서 내는 4인 가족 사람들 보면 빠지는 게 많고 환급받는데 저는 더 내거든요. 그게 그런 거 보면...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이성애자 동거커플

남편하고 2년 동안 동거하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자고 남편이 계속 날 설득했던 이유가... 내가 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 법적부부가 아니면 등록금(학비)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이유(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 약 200만원/년이 돌아온다고 함)

- 한국여성민우회, 이성애자 동거커플

위 사례와 같이 결혼제도 바깥의 커플들은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파트너에 대한 인적 공제나 지출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는 파트너의 존재나 그 사람이 지출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세금 책정 시 고려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커플은 비슷한 규모의 소득·지출 수준인 결혼한 부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주거

주거는 함께 생활공동체를 꾸리기로 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재산으로서 의미도 큰 만큼 구입과 처분이 용이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와 관리의 권한 역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법률이 기초하고 있는 ‘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주민등록법상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그 정의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세대원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규정되는 혼인 외 비혈연 생활공동체는 주택공급에서 세대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며,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커플 중심 생활공동체는 아니지만, 혈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SH공사의 임대주택에서 친구와의 공동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로 꿈에 그리던 공공임대주택 당첨을 받고, 공간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생이라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과 임대주택 계약 등 모든 것은 저의 단독 명의입니다. 친구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살면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친구와의 동거사실을 알고 저를 불렀습니다. 아파트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직계존속 외에 어떤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만일 단독세대라도 결혼 등으로 법적 가족이 된 이후에 동거가 가능하다.” “타인에게 전대 등 불법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철저하게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관리비를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 부담하는 것도 불법행위이다.” 다수의 무주택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정책이고, 여기서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내가 가족이 아닌 누구와 함께 사는지 관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고,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려가서...”, 2007.1.4.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항을 보면 대항력을 갖는 임차인은 본인과 주민등록에 포함된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주민등록주소를 옮기거나 동거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자녀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비혈연관계의 ‘동거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를 구성했을지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권 상속에 있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은 자신이 살던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법·제도적으로 명문화된 조항 외에도 결혼제도 밖의 커플들은 가구원 수나 자녀수 등을 중요시하는 주택청약이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 공동거주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세금 대출 이런 것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아예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막상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확실히 주택이나 이런데서 (차별이) 많은 거 같아요. 대출이나 이런

거 못 받고 청약 순위에서 밀리고 이런 게 큰 거 같아요.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이성애자 동거커플

3) 사회보험

사회보험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유족이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혼관계에서 배제된 커플들은 상대방이 납입한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 200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까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결혼 직후 2000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A씨가 직장에서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상속이 파트너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공단 측은 법적으로는 A씨가 솔로이므로 사망 후 연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였다.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서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담 흘려 벌은 돈으로 부어온 연금을 파트너에게 주지 못하고 국가에 몰수당해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발표집, 남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특히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를 중심으로 5대까지 광범위한 확대가족을 포괄하고 있으며 부양요건을 판단할 때 동거 여부(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가 주요한 판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임이 입증되면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마저 증명할 수 없는 커플은 각자 직장가입-지역가입, 지역가입-지역가입의 이중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애가 만약 나의 (등록된) 부양가족이었으면 의료 보험을 직장에서 내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까 그냥 따로 내지요. ...또 소득 공제 같은 거. 부양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많이 차이 나거든요. 부부라면 혜택을 받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남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4) 고용관련 제도

최근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 여러 고용관련법과 제도에서도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혼인·혈연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노동자의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고용관련 법·제도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혼제도 밖의 생활공동체들이 제도상의 차별을 받는 사례 역시 많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채용, 승진 등 고용과정 전반에서 기업의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상황차별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차별이 적절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외국 사람들은 면접볼 때 그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왜 결혼 안했느냐는 것 등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걸 따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동성애자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일과 아무 상관없으므로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대답했죠. 웃긴 것은 이혼한적 있다고 대답하면 (이전에 집의 강요로 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었고요) 질문을 딱 접어요.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남성 동성애자 공동체가족

결혼제도 바깥의 생활공동체 커플들은 어떤 가족을 구성하고 있던 법적으로는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이 채용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 구직자의 가족상황은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모집·채용 단계에서부터 구직자의 가족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이러한 관행이 소위 '비정상가족'에 대한 편견과 간접차별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 30대 그룹 계열사 177곳의 입사지원양식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4.6%에 해당하는 132곳이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가족의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실제 비혼자나 법적으로만 비혼인 사람들은 기혼인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강요받지만 정작 승진 우선순위에서는 누락되는 게 관행화 되어 있는 직장문화를 경험한다. 아래 사례는 커플 생활공동체는 아니지만 비혼자가 그러한 직장 내에서 느끼는 부당함을 잘 보여준다.

혼자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인사상에서도 불이익이 있는 것 같다.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한 남성들이나 여성들보다 순서가 쳐지는 경우가 있다. ...인사조건에 있어서는 애아빠, 애엄마인 기혼자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여성 1인 가구

그 밖에 가족수당, 경조사휴가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 시행하는 제도에서도 법률상 커플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가족상황을 당당히 밝힐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이성애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의 결혼 휴가가 주어지잖아요? ...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라는 거, 결혼을 하면 양쪽 집안에 확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구성원으로서. 그러면 저는 제 파트너의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제가 간호사기 때문에 가족 간병 휴가비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제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휴가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 한국여성민우회, 남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5) 재산관계

20여 년에 걸친 동거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재산 형성도 함께했지만 남성에게 닥친 불의의 사망사고 이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남성의 부모에게 쫓겨난 B씨(42·여) 경우는 흔한 사례다. 대부분 사실혼 관계에서 여성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다.

- 세계일보, "일단 살아보고...사실혼 느는데 법적보호 '구멍' 상속권 등 없어 여성들이 불이익...대책 마련 시급", 2007.7.18.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커플이라 해도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 불합리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마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해소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방이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그들의 이성애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은 것이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2004. 8. 2.

김씨는 20년 동안 같이 살던 이와 헤어졌을 때 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이성애 부부라면 헤어질 때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성애 부부에게는 그런 것을 보장해줄 법적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현재도 그는 비슷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김씨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당연히' 자신의 파트너를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상 파트너가 김씨의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탓에 별도의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는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을 꼬박 꼬박 붓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이 누구에게 갈까'하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진다"면서 "우리나라도 파트너십 제도나 동성결혼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레시안,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사회적 수난”, 2006. 5. 23.

재산관계에 있어 이와 같은 법적 사각지대는 위 레즈비언 커플의 사례처럼 상대방의 육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피해당사자가 입은 고통을 방치할 뿐 아니라, 관계 해소 자체를 고려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입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거 중인 커플이 단독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이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 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민법상 입양을 할 경우 부부의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비혼인 사람이 입양기관에서 적용하는 절차적 기준에 부합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독신자로서 입양을 하려면) 내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 하고, ...(입양한 아이에게) 내 부모가 양육자가 되고 제가 부양자가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쪽(입양기관)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생각보다 재산상의 요구는 많이 요구하지 않는데 ...황당했던 게 내가 10년 정도를 같이 산 남자 친구가 양육자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원천적으로 아이 입양을 못하는... 사실 70대 노인네들보다 훨씬 더 부양 능력, 양육 능력이 큰데. ...힘들 거 같긴 하더라고요, 입양은.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이성애자 동거커플

위 사례와 같이 입양기관이 법·제도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양이 제한되는 관행은 매우 일반적인데, 이는 입양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입양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승인되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관행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 하겠다.

7) 의료서비스 이용

대부분의 커플 중심 생활공동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차별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환자인 파트너의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권을 가지고 환자의 상황에 대해 들을 권리, 입원시 면회할 수 있는 권리, 수술시 동의하고 보증할 수 있는 권리, 임종시 입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혈연관계의 가족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 제가 이제 장염, 급성장염으로 새벽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는데 거기 입원...그 입원동의서에 서야 되는 것이 제 파트너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누나가 와서 서명을 해 줬는데, 누나들이 다 돌아가시면, 제 주변에 없으며, 저는 입원동의서를 써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배우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제 보호자가 의료적 권한을 할 수 없는 거죠...

- 한국여성민우회, 남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20대 중반의 레즈비언 커플인 A씨는 늦은 밤에 파트너 B씨가 갑작스런 출혈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지금 올 수 없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이었던 탓에 밤중에 100만원을 구할 수 없었던 A씨는 하는 수없이 멀리 사는 B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A씨는 다행히 B씨의 병이 크지 않아서 친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만약 상태가 위중하기라도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돈이 아주 많거나 친가족 가까이 항상 붙어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냐고 하소연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자료, 여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사실 수술동의서, 입원동의서 등 의료적 처치에 대해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어떤 법·제도 상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관행’이다. 그러나 의료처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당장 생명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절박할 수밖에 없다.

나. 사회·문화적 차별

1) ‘비혼=미성인’ 이라는 인식

결혼제도 밖의 생활공동체들은, 스스로 그러한 관계를 능동적으로 선택했던 법·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태든, 법적으로 비혼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이들은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결혼을 통해 완전한 시민으로서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화 속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쉽게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결혼 안한 여자에 대해 끊임없이 가십거리처럼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과 연결시키려고 하거나, 엮어주려고 하면서 내 의사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문화적인 편견이 불편하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독립된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와 결혼시켜야 하는 미완의 존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불쾌하다. 이런 시각이 많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여성 1인 가구

레즈비언 커플은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어떤 법적 제도적 혜택은커녕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 배우자도 양쪽 가족에게 소개시킬 수 없고, ...결혼도 안했다고, 부모님은 성인으로 인정도 안 해 주고...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 동성애자

피면접자1 :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결혼을 안 하면 애 취급을 해요.

피면접자2 :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미혼인 사람들은 청년부에 있어야 하거든요? 제 동기들은 다 결혼해서 장년부 갔단 말예요. 그러면 계속 청년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올라가지 않는 거지.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남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위 사례와 같이 직장이나 교회, 그리고 다른 혈연가족 관계 내에서 이들은 ‘미완의 존재’, ‘성인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경우 그에 따른 차별과 부담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결혼=성인’이라는 사회 인식이나 그에 기초한 여러 가지 제도·관행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은 온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2) 소속된 공동체에서의 배제

우리사회에서 법적인 결혼제도 바깥에 있는 커플들은 대개 비정상적인 관계로 여겨지며, 특히 동성애자, 성전환자 커플은 자신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은 각자 혹은 커플이 공통으로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직장, 학교, 지역사회나 혈연관계의 가족, 친구 등-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배제되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며 살아가곤 한다.

언니가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집에 놀러갔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집 문을 벌컥 열기도 하고 (문과 방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자꾸 둘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등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 한국여성민우회, 이성애자 동거커플

동성커플에 대한 인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동성커플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을 숨길 것을 강제 받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 이들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꾸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항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다.

면접자: 이성애자 친구들이나 직장동료에게 서로를 소개한 적이 있는지?

피면접자1: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준 적 없어. 내가 친구랑 같이 산다는 건 알아. 근데 그 친구랑 그런 관계인 건 모르는 거지.

피면접자2: 나도. 주변 레즈비언 친구들 말고는 소개시켜 준 적 없어. 그냥 친구랑 같이 산다는 거,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더라. 레즈비언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눈치인데, 지금 직장에서 내가 친구랑 같이 산다니까 약간 그런 눈초리를 보낸 사람이 있어. ...일단 그냥 친구랑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결혼 안한 거 가지고 문제가 많지. 근데 직접적으로는 없었어. 근데 부서 안에서 그런 갈등이 심해지는 게 있지. 분위기가.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여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이러한 공동체로부터의 배제 때문에 이들 가족구성원들은 일상적인 소외감을 느끼며 심각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역으로 커플 간의 관계를 항상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가족' 으로 인정받기

의지와 무관하게 결혼제도 바깥의 생활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들의 관계가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능동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선택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승인이 주는 안정감, 자존감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인식되곤 한다.

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면 동성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안정될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동거잖아요. 말 그대로. 엄마도 저희한테 동거라고 하더라고요. 동거 개념. 동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수많은 남자들이 왜 결혼을 해요? 그냥 동거하면서 애 낳고 살면 되지. 일단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면 우리 부모님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남성 동성애자 동거커플

(혹시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동성 커플 등록 제도가 생기면 등록하겠냐는 질문에) 난 했으면 좋겠거든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공공기관이나 어디 갔을 때 그냥 떳떳하게 집사람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 치지만, 그렇게라도 인정을 받는다는 게 떳떳한 거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한 명이 FTM인 동거커플

물론 이들 공동체 사이에서는 동성혼이나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러한 제도 내로 편입될 수 있는 공동체와 그럴 수 없는 혹은 계속해서 제도 밖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동체 간의 또 다른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제도 자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의 욕구

가 매우 다양한 층위를 가지는 만큼 그러한 차이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모색해 보는 것이 새로운 가족대안을 만들어가는 현실적 경로가 될 것이다.

3. 마치며: 차별을 둘러싼 쟁점들

앞서 차별사례들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대안역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현행 결혼·가족제도의 근간이 되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생활동반자관계의 등록절차를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밖의 생활공동체에 제도 내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 외에 앞서 언급한 다양한 영역의 법·제도들이 내재하고 있는 정상가족 중심주의를 제거해 나가는 작업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경험하는 편견과 소외감, 정신적·정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차원의 모색에 앞서 우리사회에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일 수 있다. 아직까지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사례는 상당부분 비가시화 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차별’로 규정하며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법적 장치나 담론적 자원이 부재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가족상황을 숨김으로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함을 피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고 사는데 익숙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가족상황차별로 규정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상황차별을 규제하는 법적 절차를 정비하게 위해서는 차별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가족 상황에서 여러 법·제도·정책들이 가져야 할 형평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조세제도나 사회보험제도에서 결혼제도 바깥의 가족이 제도 내 가족 보다 금전적 부담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해소와 다른 여러 가치들, 다양한 가족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시기 가족상황차별을 하나의 독자적인 차별영역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시급하지만, 그것이 갖는 중층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족상황차별은 그 구성원들의 계층·성별·성적 지향·인종 등 다양한 차별 요소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일수록 가족상황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적 차별들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가족상황차별을 없애는 데 필수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만큼 다양한 요인에 따른 누적된 차별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가족상황차별을 진단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